

PART
II

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

1. 배경

☐ 근거 법령

- 결핵예방법 제11조(결핵검진등), 제11조의2(준수사항), 제34조(과태료)
- 같은법 시행령 제1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-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(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), 제4조의2(준수사항)

☐ 목적

- (의료기관 종사자 보호) 결핵환자를 검진·치료하는 의료인 등 결핵균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결핵으로부터 보호
- (의료기관 이용자 보호)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등 국민을 결핵으로부터 보호

☐ 검진 개요

- (계획 수립)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주기·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
- (검진 대상) 의료기관 종사자
 - 검진 대상에는 의료인 등 기관 내 모든 종사자를 포함
 -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의료기관장의 지휘·감독 하에 있는 파견·도급·용역 종사자도 포함

- **(검진 항목)**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
- **(검진 주기)** 결핵 검진은 매년 실시,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하며, 고위험군은 매년 실시
- **(검진 후 조치사항)**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료기관에서 작성·보관
 - * 결핵예방법 제34조(과태료)에 따라 검진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함

☐ 결핵예방 교육

- **(예방 교육)** 의료기관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
 - * 교육 및 홍보는 'Ⅲ. 참고자료 - 5. 결핵 교육 및 홍보 자료' 참고

□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: 잠복결핵감염 검진에서 양성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

- 추가 검사 실시 : 흉부X선 검사 실시하여 활동성 결핵 여부 확인
 - 흉부X선 검사 결과 **유소견자** → 추가 결핵검사 실시 [II-2. 결핵 검진 참조]
 - 흉부X선 검사 결과 **활동성 결핵 배제** → **잠복결핵감염 치료 권고**
 - 잠복결핵감염 치료
 - (치료 실시)
 - 1군 대상자
 - 흉부X선 상 ‘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’이 있으나, 과거 결핵 치료력이 없는 경우
 - **최근 2년 이내** 주기적 검사에서 TST 또는 IGRA 검사에서 **양전이 확인된 경우**
 - **결핵발병 고위험군***
- * 결핵발병 고위험군 : HIV 감염인, 장기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,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
- (치료 강력권고)
 - 2군 대상자
 - **결핵발병 중등도 위험군***
- * 결핵발병 중등도 위험군 : 규폐증,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,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, 당뇨병, 두경부암 및 혈액암,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 시행 혹은 시행 예정자
- (치료 권고)
 -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자(치료의사가 대상자의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)
 - (경과 관찰)
 - 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이나 간독성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위험, 이익을 고려하여 치료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할 수 있음
 -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 최소 2년 간 경과 관찰을 요함